

2015학년도 제4차
〈제320차 이사회 회의록〉

2015. 8. 13.

학교법인 대우학원

학교법인 대우학원

2015학년도 제4차

<제320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2 인	2 인
재직임원	12 인	2 인
참석임원	12 인	2 인

1. 일 시 : 2015.8.13(목) 07:30 ~ 09:40 (회의소집 통보일 : 2015년 8월 5일)

2. 장 소 : 포스코센터 라운지룸 (포스코 B/D 서관 19층)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임원

- 이사 : 추호석, 김성진, 윤성복, 문길주, 신희택, 주인욱, 김동연, 박상일, 신상협, 이영현, 최홍, 김선용 (12인)
- 감사 : 문휘창, 배홍기 (2인)

4. 교·직원 출석사항

- 아주대학교 : 의료원장 유희석, 교무처장 임석철, 기획처장 이중섭,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기획팀장 김의섭, 예산팀장 조경숙 (6인)
- 아주자동차대학 : 총장 신성호 (1인)
- 법인사무처 : 팀장 임홍식, 김창현 (2인)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직이사 열두분 중 열두분 전원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
으므로 제320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6. 보고사항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12동연

이사 이영현

이사장 : 회순에 따라 아주대학교 및 아주자동차대학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중섭 기획처장 · 신성호 아주자동차대학 총장이 각 기관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다.)

이사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 심의안건

상임이사 이영현 : 제320차 이사회 심의안건은 학법대우 제15-231호(2015.08.05)로 통보한 내용과 같이 의안 제1호 2016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 의안 제2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의안 제3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의안 제4호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5호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6호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의안 제7호 의료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8호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승진·재임용·정년보장·석좌교수 임용 동의(안), 의안 제10호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의안 제11호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의안 제12호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의안 제13호 2015학년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등 13개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8. 심의내용

제 1 호 2016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

이사장 : 2016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 :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에 따라 정책에 부합하는 교육여건을 확보하고, 산학협력강화 및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우수인력 초빙을 목적으로 2015년 미충원 인원 1명을 포함하여 총 2명의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충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4월 1일 기준 전임교원은 총 28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간서명란>
이사장 이중섭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 2 -

이사문길주 : 정부평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충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김선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2016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2 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이사장 :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발의.

기획처장 이중섭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책임있는 대학 운영 조직과 조직의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산학협력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할 산학부총장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된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사장 : 개정(안)에 대해 총장님께서 부연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사(총장) 김동연 :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정관상에는 현재 교무부총장과 의무부총장을 두고 있으며 교무부총장은 공석인 상태입니다. 우리 대학의 연구처장과 산학협력단장, 링크사업단장을 현재 한 분이 맡고 계신데 이번에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이에 연구처장도 사임을 하시고 교내 산학협력 업무를 관장할 부총장이 한 분 계셨으면 하여 산학부총장을 신설하고자 안을 마련하였으며, 그동안 링크사업단장을 부총장급으로 했으면 하는 교육부와 연구재단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부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신희택 : 산학협력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의 정책적인 판단으로 보이며, 원(안)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윤성복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
<간서명란>

이사장 이수호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대우학원 정관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46조 (임 면) ① 내지 ② (생략) ③ 대학교의 교무(校務)부총장, 의무(醫務)부총장, 의료원장, 대학원장(전문대학원장 및 특수대학원장 포함), 학장, 처장, 부속병원장, 첨단의학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 병원 부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내지 ⑤ (생략)</p>	<p>제46조 (임 면) 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학교의 교무(校務)부총장, 의무(醫務)부총장, <u>산학부총장</u>, 의료원장, 대학원장(전문대학원장 및 특수대학원장 포함), 학장, 처장, 부속병원장, 첨단의학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 병원 부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내지 ⑤ (현행과 같음)</p>
<p>제87조 (학교의 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校務)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교무부총장(校務副總長)과 의무부총장(醫務副總長)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④ 교무부총장은 <u>의무(醫務) 이외의 교무(校務)</u>에 관하여, 의무부총장은 <u>의무(醫務)</u>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각 부총장은 총장이 구체적으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한다. ⑤ (생략)</p>	<p>제87조 (학교의 장 등) 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학교에 교무부총장(校務副總長), 의무부총장(醫務副總長)과 <u>산학부총장을</u>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④ 교무부총장은 <u>의무(醫務)와 산학협력 이외의 교무(校務)</u>에 관하여, 의무부총장은 <u>의무(醫務)</u>에 관하여, <u>산학부총장은 산학협력에</u> 관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각 부총장은 총장이 구체적으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한다. ⑤ (현행과 같음)</p>
	<p>부 칙</p> <p>(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제 3 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처장 이중섭 :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규정 개정(안)은 정관 개정에 따른 산학부총장 신설과 총장직속기구의 개편, 대외협력처 명칭 변경 및 보직 부여의 근거 범위 확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 4 -

기동연

이사

이영현

내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의결한 정관 개정에 따라 직제규정 제5조 기구에 산학부 총장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총장직속기구의 대학발전본부 및 홍보실을 브랜드전략 실로 직제 개편하고, 비서실 산하에 대외협력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산학부총장 직속기구로는 프로젝트지원팀을 신설하며, 기획처 산하에 대학발전팀을 두고, 기존 대외협력처와 국제협력팀은 각각 국제협력처 및 국제교류팀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교류팀 및 브랜드전략실 등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팀장과 실장을 계약직원으로 임명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윤성복 : 직제 개편을 통해 인력이 몇 명이나 늘어나게 되나요?

기획처장 이중섭 : 개편에 따른 증원 계획은 없습니다. 기존 대학발전본부에 소속된 직원이 있어 증원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사(총장) 김동연 : 대학발전계획상 조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이사회에 보고를 드리고 인력 변동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안으로 인력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사 박상일 : 부총장직속기구를 별도로 둔다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염두에 두신 것인지요?

이사(총장) 김동연 : 산학부총장 직속기구인 프로젝트지원팀은 처간의 업무조정 역할까지 수행할 계획입니다. 여러 국책사업, 대형 프로젝트, 교내 융합연구 등 많은 수요가 있으나 조직 간 업무 조정의 효율이 떨어져 부총장 산하에 팀을 두어 업무 조정하고자 하며, 산학부총장께서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사 윤성복 : 추진력 있는 대학행정을 위한 직제 개편으로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김선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5조(기구) ① 본 대학교는 총장, 교무부총장, 의무부총장, 대학, 대학원, 특수학부, 대학교본부, 부속기관, 연구기관, 지원기관,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의료원 및 총장직속기구를 둔다.</p> <p>② 내지 ③ (생략)</p> <p>④ 대학교본부에는 교무처, 연구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처 및 <u>대외협력처</u>를 둔다.</p> <p>⑤ 내지 ⑥ (생략)</p> <p>⑦ 지원기관은 대학, 대학원, 대학교본부, 부속기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소속이 없는 지원기관으로 학생군사교육단, 예비군연대, 과학영재교육원을 둔다.</p> <p>1. 내지 8. (생략)</p> <p>9. <u>대외협력처</u>: 불어권협력센터, 국제교육센터</p> <p>10. 내지 13. (생략)</p> <p>⑧ 총장직속기구로 <u>대학발전본부</u>, <u>홍보실</u>, <u>비서실</u> 및 <u>산학협력선도대학(LINC)</u> 육성사업단을 둔다. <u>(신설)</u></p> <p>⑨ 교육·연구 진흥과 학교 발전에 필요한 특수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1항 내지 제8항의 기구 외에 특별기구를 학칙에 둘 수 있다.</p>	<p>제5조(기구) ① 본 대학교는 총장, 교무부총장, 의무부총장, <u>산학부총장</u>, 대학, 대학원, 특수학부, 대학교본부, 부속기관, 연구기관, 지원기관,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의료원, 총장직속기구 및 <u>부총장직속기구</u>를 둔다.</p> <p>② 내지 ③ (현행과 같음)</p> <p>④ 대학교본부에는 교무처, 연구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처 및 <u>국제협력처</u>를 둔다.</p> <p>⑤ 내지 ⑥ (현행과 같음)</p> <p>⑦ 지원기관은 대학, 대학원, 대학교본부, 부속기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소속이 없는 지원기관으로 학생군사교육단, 예비군연대, 과학영재교육원을 둔다.</p> <p>1. 내지 8. (현행과 같음)</p> <p>9. <u>국제협력처</u>: 불어권협력센터, 국제교육센터</p> <p>10. 내지 13. (현행과 같음)</p> <p>⑧ 총장직속기구로 <u>브랜드전략실</u>, <u>비서실</u> 및 <u>산학협력선도대학(LINC)</u> 육성사업단을 둔다.</p> <p>⑨ <u>산학부총장 직속기구로 프로젝트지원팀을 둔다.</u></p> <p>⑩ 교육·연구 진흥과 학교 발전에 필요한 특수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1항 내지 제8항의 기구 외에 특별기구를 학칙에 둘 수 있다.</p>
제7조(부총장) 교무부총장은 <u>의료원</u> 을 제외한 교무에 관하여, 의무부총장은 의료원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제7조(부총장) 교무부총장은 <u>의료원과 산학협력을</u> 제외한 교무에 관하여, 의무부총장은 의료원에 관하여, <u>산학부총장은 산학협력에</u>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p>제9조(대학교본부) ① 내지 ④ (생략)</p> <p>⑤ 기획처는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동 계획의 집행에 대한 심사분석, 대학평가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u>기획팀</u> 및 <u>예산팀</u>을 둔다.</p> <p>⑥ (생략)</p> <p>⑦ <u>대외협력처는 국외 대학 및 기관과의 협력을</u> 지</p>	<p>제9조(대학교본부) ① 내지 ④ (현행과 같음)</p> <p>⑤ 기획처는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동 계획의 집행에 대한 심사분석, 대학평가, <u>대학발전기금 조성 업무</u>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u>기획팀</u>, <u>예산팀</u> 및 <u>대학발전팀</u>을 둔다.</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u>국제협력처는 국외 대학 및 기관과의 협력을</u> 지</p>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원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u>국제협력팀을 둔다.</u></p> <p>⑧ 내지 ⑨ (생략)</p> <p>⑩ 각 처의 팀에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원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u>국제교류팀을 둔다.</u></p> <p>⑧ 내지 ⑨ (현행과 같음)</p> <p>⑩ 각 처의 팀에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국제교류팀의 경우 계약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p>
<p>제12조(총장직속기구) ① <u>대학발전본부는 대학발전기금의 조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u></p> <p>② <u>홍보실은 대내외 홍보를 담당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홍보팀을 둔다.</u></p> <p>③ <u>비서실은 총장 및 교무부총장의 의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u></p> <p>④ (생략)</p> <p>⑤ <u>대학발전본부에는 본부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p> <p>⑥ <u>홍보실 및 비서실에는 실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p> <p>⑧ <u>홍보팀에는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p>	<p>제12조(총장직속기구) ① <삭제></p> <p>② <u>브랜드전략실은 브랜드 차별화와 관리를 위한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한다.</u></p> <p>③ <u>비서실은 총장 의전 및 대외 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대외협력팀을 둔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삭제></p> <p>⑥ <u>브랜드전략실 및 비서실에는 실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브랜드전략실의 경우 계약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u></p> <p>⑧ <u>대외협력팀에는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p>
(신설)	<p>제12조의2(부총장직속기구) ① <u>프로젝트지원팀은 산학부총장 직속으로 교수 연구수주 진흥을 위한 기획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u></p> <p>② <u>프로젝트지원팀에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p>
제14조(교무회의) ① 본 대학교에 교무회의를 두고, 교무회의는 총장, 교무부총장, 의무부총장, 대	제14조(교무회의) ① 본 대학교에 교무회의를 두고, 교무회의는 총장, 교무부총장, 의무부총장, 산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학원장, 대학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u>대외협력처장</u> , 의료원기획조정실장,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u>학부총장</u> , 대학원장, 대학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u>국제협력처장</u> , 의료원기획조정실장,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u>부 칙</u>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4 호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발의.

교무처장 임석철 :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이끌어갈 탁월한 업적의 교원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초빙시 석좌교수 칭호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총장님께서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사(총장) 김동연 : 개정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번에 포항공대 수학과 교수님을 초빙하는데 재임하고 있는 대학에서 석좌교수로 곧 임명될 예정이어서 우리 대학에 모실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기회에 석좌교수 제도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교내 전임교원 중에서도 탁월한 업적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석좌교수 제도를 적용하고자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우선 외부에서 오시는 분에게 먼저 적용하고 추후 내부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확대 운영을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김성진 : 아주대에서 좋은 제도를 도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윤성복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교원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 2 장 임용 및 교수업적평가 <u>(신 설)</u>	제 2 장 임용 및 교수업적평가 <u>제 4 절 석좌교수</u> 제23조의2(석좌교수의 임명 등) ① 탁월한 연구업적이나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를 본교 교수로 임용시 석좌교수 칭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석좌교수는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명한다. ③ 석좌교수의 임명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총장은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5 호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처장 이중섭 : 직원인사규정 개정(안)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의 정년을 직종, 직급에 관계없이 만 60세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행일은 2016년 1월 1일부터이며,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이사 박상일 :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윤성복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직원인사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직원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44조(정년) ① 직원의 직종 및 직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p> <p>1. 일반직, 기술직 2, 3, 4 및 5급은 60세 일반직, 기술직 6, 7, 8 및 9급은 58세</p> <p>2. 기능직은 58세</p> <p>② 정년퇴직 기준일은 정년 해당월이 속하는 학기말일로 한다.</p>	<p>제44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p> <p>1. <삭제></p> <p>2. <삭제></p> <p>② 정년퇴직 기준일은 정년 해당월이 속하는 학기말일로 한다.</p>

제 6 호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장 :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의료원 자체규정 개정(안)은 간호부 내 ‘외상간호팀’과 ‘수술간호팀’을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외상간호팀은 2016년 3월 권역외상센터 증축 운영 예정으로 간호사 약 200명, 보조원 약 50명의 간호인력 관리를 위하여 팀을 신설 운영하고자 하며, 병원 수술실 23실과 마취회복실 14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이 필요하여 수술간호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 후에는 현행 1부 6팀이 1부 8팀으로

<간서명판> 이사장 주도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 10 -

운영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주 인 육 : 간호인력 관리를 위한 실제 개편(안)으로 병원 운영상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8조(간호부) 간호부에는 간호행정교육팀, 외래간호팀, 병동간호1팀, 병동간호2팀, 집중간호팀, 응급간호팀 <삽입>을 두며, 각 팀에는 팀장을 둔다.	제18조(간호부) 간호부에는 간호행정교육팀, 외래간호팀, 병동간호1팀, 병동간호2팀, 집중간호팀, 응급간호팀, <u>외상간호팀</u> , 수술간호팀을 두며, 각 팀에는 팀장을 둔다.
	<u>부 칙</u> <u>(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제 7 호 의료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의료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육 : 의료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은 본교 직원인사규정 개정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본교와 마찬가지로 시행일은 2016년 1월 1일부이며, 이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신설하고 그 휴직기간은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가 동 연

이 사 이 영 현

니다. 기타 중복내용 삭제 및 문구 수정 등이 있었으며,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박 상 일 :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의료원 직원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6조(임용의 원칙) ① 직원의 임용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경쟁임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u>특별</u> 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만으로 할 수 있다.</p> <p>② 전항에 의한 임용은 직원의 정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한다.</p>	<p>제16조(임용의 원칙) ① 직원의 임용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경쟁임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u>특별</u> 임용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0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원할 때2.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3.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되었을 때4. 법령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5.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고 유학하게 된 때6.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6개월까지의 병가기간이 경과하여도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7. 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p>제40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내지 6. <현행과 같음>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

<간서명란>

이사장 주도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u><신 설></u></p> <p>8.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 된 때 ② 휴직중의 직원은 그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p>	<p>조 제1항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p> <p>8.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요청할 때</p> <p>9.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 때 ② <현행과 같음></p>
<p>제41조(휴직기간) 전 제40조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호 및 제7호 해당자는 1년 이내로 한다. 2. 제2호 해당자는 3개월로 한다. 3. 제3호 및 제4호 해당자는 그 복무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로 한다. 4. 제5호 해당자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5. 제6호 및 제8호 해당자는 따로 정한다. <p><u><신 설></u></p>	<p>제41조(휴직기간) 전 제40조 제1항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호 <삭 제> 해당자는 1년 이내로 한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제6호, 제9호 해당자는 따로 정한다. 6. 제7호 및 제8호 해당자는 관계법령을 따른다.
<p>제42조(휴직자의 보수) ①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직원은 그 휴직기간 중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일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월일정액의 8 할을 지급한다.</p> <p>② 제40조 제2,3,4호 해당자는 월일정액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p> <p>③ 제40조 제5,6,7호 해당자에 대한 보수는 따로 정한다.</p>	<p>제42조(휴직자의 보수) ①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직원은 그 휴직기간 중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일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월일정액의 8 할을 지급한다.</p> <p>② 제4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해당자는 월일정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③ 제40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9호 해당자에 대한 보수는 따로 정한다.</p>
<p>제48조(정년) ① 직원의 직종 및 직급별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병원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부 직종에 대하여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직, 기술직 2,3,4 및 5급은 60세 6,7,8 및 9급은 58세 2. 기능직 I, 기능직 II은 58세 <p>② 정년퇴직 기준일은 정년 해당월이 속하는 학기 말일로 한다.</p>	<p>제48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 제> 2.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간서명란> ¼ ½ ¾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이사장 이사

현 행	개 정
	부 칙
	<p style="text-align: center;"><u>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u></p>

제 8 호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

이 사 장 :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 발의.

교무처장 임석철 : 아주대학교 본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교는 적정 교원확보율 유지, 우수 교원 채용을 위한 유연한 초빙제도 도입 및 비정년트랙 전임 교원 초빙의 활성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총 26명을 증·충원할 예정입니다. 2016학년도에는 배정 기준별로 2015학년도 미충원 18명, 정년퇴직·사직 등에 의한 결원 5명, 대학발전계획추진, 대학구조개혁평가대비, 교육 및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증원 3명으로 신규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죄 홍 : 적정 교원확보율 유지를 위한 초빙계획으로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다음으로 의료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아주대학교 의료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교원은 강의만을 위한 인력충원은 없으며, 교실별 인력보강보다는 줄기세포, 의료정보학, 뇌과학 등의 전략적인 임용을 계획하였으며, 2022년까지 정년퇴임 인원 총 6명을 고려하여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임상교원은 신규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되 특임교원에서 전임교원으로의 전환 요청사항은 진료실적, 임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권역외상센터 준공에 따른 병상 약 100bed 증가를 고려하여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2016학년도 신규 임용 초빙계획은 총 54명입니다.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바랍니다.

(참석임원은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윤성복 : 54명의 신규 교원 충원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약 6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 윤성복 : 의료원 추경예산(안)의 추정손익계산서상 의료이익이 57억원, 당기순이익은 2.6억원인데 신규 인력 채용시 추정손익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4명의 신규 인력 충원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손익과 연계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의료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료원장 유희석 : 인건비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충분한 임상, 기초교원은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며, 내년 권역외상센터를 통해 100병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충원 계획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충원계획은 54명을 보고드렸지만 실제는 30명 미만의 규모로 충원되지 않을까 예상하며, 이 중 9명은 중증외상센터 소속으로 국고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예산상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 신희택 :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주인욱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9 호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승진·재임용·정년보장·석좌교수 임용 동의(안)

이 사 장 :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승진·재임용·정년보장·석좌교수 임용 동의(안) 발의.

교무처장 임석철 : 본교 임용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임용 대상자는 총 12명으로 교수 1명, 부교수 2명, 조교수 4명의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부교수 1명, 조교수 4명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되겠습니다.

전임교원 승진임용 대상자는 총 21명으로 이 중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대상이 10명,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대상이 11명입니다.

< 간서명란 > 이사장 주인욱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정년보장 교원 임용 대상자는 1명으로 임용계약시 최초 3년을 근무하고 이후 본교가 정한 정년보장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년보장을 하기로 하여 임용 제청되었습니다.

앞서 의결해 주신 교원인사규정 석좌교수 칭호 부여에 따라 신규 임용되는 수학과 박형주 교수를 2015.9.1부터 3년간 석좌교수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박형주 교수는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여러 대형과제를 유치하였으며 세계 수학분야에서 가장 크고 권위있는 세계수학자대회(ICM)를 2014년에 한국에 유치하고 조직한 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세계수학연맹 운영위원으로 국제적인 활동을 활발히 해옴에 따라 석좌교수 임명 동의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특임교원으로는 약학과의 김수동 대우교수를 신규 임용 동의 요청드리며, 마지막으로 특임교원 재임용 대상자는 스포츠레저학과 이현서 대우조교수로서 임용기간 1년의 대우부교수로 임용 동의 요청드렸습니다. 각 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및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를 등을 별첨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면 심의하다.)

이사장 : 월(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신희택 : 본교 교원 신규·승진·재임용·정년보장·석좌교수임용 동의(안)에 특
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박상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본교 교원 신규·승진·재임용·정년보장·석좌교수 임용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이사장: 다음으로 의료원 임용 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의료원 전임교원 신규·승진임용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임용 대상자는 총 2명으로 전임교원 조교수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승진임용 대상자는 총 7명으로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 6명,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 1명이 되겠습니다. 신규·승진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면 심의하다.)

이사장 : 아주대학교의료원 임용 동의(안)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다.
〈간서명 란〉
이시자

大半

이사 간동연

이사 이영현

이사 김성진 : 승진심사 제청률이 낮은데 승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인가요?

의료원장 유희석 : 최소승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청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제청이 되었어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최소연구업적과 더불어 연구의 질과 향후 연구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로의 승진시는 좀더 심사숙고하여 검토하므로 제청률이 더 낮게 나타납니다.

이사 주인욱 : 엄격한 승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시다면 본교의 석좌교수 제도나 특임교수 제도 등을 활성화시켜 외부의 좋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문길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원 신규·승진임용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교원 임용 동의 내용

가. 신규임용

소속	성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교	화학공학과	심태섭	조교수 2015.9.1 ~ 2018.8.31 (3년)
	응용화학생명공학과	김은하	조교수 2015.9.1 ~ 2018.8.31 (3년)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고정길	조교수 2015.9.1 ~ 2018.8.31 (3년)
	수학과	박형주	교수 2015.9.1 ~ 정년
	수학과	권순선	조교수 2015.9.1 ~ 2018.8.31 (3년)
	심리학과	김은하	부교수 2015.9.1 ~ 2018.8.31 (3년)
	약학과	윤태종	부교수 2015.9.1 ~ 2018.8.31 (3년)
	미디어학과	정태영	부교수 2015.9.1 ~ 2017.8.31 (2년)
	정보컴퓨터공학과	Yenewondim Biadgie Sinshaw	조교수 2015.9.1 ~ 2017.8.31 (2년)
	정보컴퓨터공학과	Rize Jin	조교수 2015.9.1 ~ 2017.8.31 (2년)
	불어불문학과	Magali Plattet	조교수 2015.9.1 ~ 2017.8.31 (2년)
	다산학부대학	Philip Chivers	조교수 2015.9.1 ~ 2016.8.31 (1년)
	약학과	김수동	대우교수 2015.9.1 ~ 2017.8.31 (2년)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의 료 원	순환기내과학교실	박진선	조교수	2015.9.1 ~ 2018.8.31 (3년)
	간호학과	배선흥	조교수	2015.9.1 ~ 2018.8.31 (3년)

- 이상 본교 13명 / 의료원 2명 -

나. 승진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 교	산업공학과	신현정	교 수	2015.9.1 ~ 정년
	전자공학과	박용배	교 수	2015.9.1 ~ 정년
	영어영문학과	김미현	교 수	2015.9.1 ~ 정년
	불어불문학과	김용현	교 수	2015.9.1 ~ 정년
	경제학과	이규상	교 수	2015.9.1 ~ 정년
	정치외교학과	이왕희	교 수	2015.9.1 ~ 정년
	법학전문대학원	오승환	교 수	2015.9.1 ~ 정년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 수	2015.9.1 ~ 정년
	교육대학원	맹은경	교 수	2015.9.1 ~ 정년
	교육대학원	박미화	교 수	2015.9.1 ~ 정년
	건축학과	김지엽	부교수	2015.9.1 ~ 2021.8.31 (6년)
	전자공학과	감동근	부교수	2015.9.1 ~ 2021.8.31 (6년)
	수학과	황동선	부교수	2015.9.1 ~ 2021.8.31 (6년)
	경영학과	윤소라	부교수	2015.9.1 ~ 2021.8.31 (6년)
	경제학과	김한성	부교수	2015.9.1 ~ 2021.8.31 (6년)
	경제학과	박영준	부교수	2015.9.1 ~ 2021.8.31 (6년)
	약학과	백승훈	부교수	2015.9.1 ~ 2021.8.31 (6년)
의 료 원	분자과학기술학과	서민덕	부교수	2015.9.1 ~ 2021.8.31 (6년)
	분자과학기술학과	유태현	부교수	2015.9.1 ~ 2021.8.31 (6년)
	에너지시스템학과	서형탁	부교수	2015.9.1 ~ 2021.8.31 (6년)
	에너지시스템학과	안병민	부교수	2015.9.1 ~ 2021.8.31 (6년)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정다은	부교수	2015.9.1 ~ 2021.8.31 (6년)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이장훈	부교수	2015.9.1 ~ 2021.8.31 (6년)
	신경외과학교실	김상현	부교수	2015.9.1 ~ 2021.8.31 (6년)

- 이상 본교 21명 / 의료원 7명 -

< 간서명 란 >
이사장 주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다. 정년보장 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시스템공학과	김의환	교 수	2015.9.1 ~ 정년

라. 석좌교수 임명

소속	성명	임명내용	임명기간
수학과	박형주	석좌교수	2015.9.1 ~ 2018.8.31 (3년)

마. 재임용

소속	성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스포츠레저학과	이현서	대우부교수	2015.9.1 ~ 2016.8.31 (1년)

제 10 호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이사장 :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아주대학교 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전 기이월자금 예산편성 및 전년도 승인 미집행분에 대한 2015학년도 이월 예산편성, 메르스관련 수입감소에 따른 예산 조정 반영, 메르스관련 지출 증가 및 관리비 절감 계획 반영, 하반기 리모델링 및 주요 정책사항의 추가지출, 산학연구기부금 수입, 지출 및 연구중심병원 연구활성화 연구비 반영, 명예퇴직급여 및 전출금 조정 반영, 순수 운영자금 이월금 반영이 되겠습니다. 부속병원의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8,584백만원 감소한 491,26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의 세부적인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수립 및 지출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하다.)

이사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 배홍기 :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의료수익이 89억원 감소하고 의료비용이 40억원 감소하여 의료이익이 49억원 감소하고 당기순이익도 19억원 감소하는 예산(안)입니다. 의료수익 감소는 메르스 관련 수입 감소를 반영한 것으로 실제 6월 의료수익이 전년 대비 25억원 감소하였고 향후 67억원의 추가 감소를 예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비용은 명예퇴직 감소 등으로 인건비가 5억원 감소하였으나 임금협상 결과가 미반영 되었고, 재료비는 의료수익 감소에 따른 감소로 메르스관련, 현

<간서명 란> 이사장 주호석

이 사

- 19 -

대아주의원 등의 증가에도 2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관리비는 수입감소로 인한 복리후생비 등 관리비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페르스관련 지출 증가, KT야구장 홍보,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본예산 대비 19억원 감소하여 3억 수준으로 낮아져 임금협상 후 인건비 증가시 당기순손실이 예상되므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의료비용 예산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절감 집행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윤 성 복 :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합니다.

■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관 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본 예산액	증 감
수 입	의 료 수 입	414,724,000	423,590,000	-8,866,000
	의 료 외 수 입	31,263,897	30,064,600	1,199,297
	기타고정부채수입	1,280,000	1,280,000	0
	차 입 금 수 입	13,518,500	13,000,000	518,500
	기 본 금 증 가	0	0	0
	전 기 이 월 자 금	30,479,603	31,915,400	-1,435,797
	계	491,266,000	499,850,000	-8,584,000
지 출	의 료 비 용	359,940,600	364,034,200	-4,093,600
	의 료 외 비 용	15,740,400	15,224,400	516,000
	투자와기타자산지출	30,000	30,000	0
	기타고정부채상환	1,280,000	1,280,000	0
	고 정 부 채 상 환	9,610,000	9,610,000	0
	고 정 자 산	46,729,400	41,661,300	5,068,100
	전 출 금	38,608,000	40,881,600	-2,273,600
	예 비 비	5,000,000	5,000,000	0
	차 기 이 월 자 금	14,327,600	22,128,500	-7,800,900
	계	491,266,000	499,850,000	-8,584,000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제 11 호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빌의.
기획처장 이중섭 :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국고수입, 전입금, 기부금수입, 기금인출 등 운영수입예산 증가에 따른 지출예산, 2014학년도 결산 이월분에 대한 지출 예산을 반영한 편성으로 전체 규모는 본예산 대비 7,654백만원이 증가한 249,65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중섭 기획처장이 추경 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 배홍기 :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2014학년도 결산에 따른 전기이월자금 확정에 따른 추경(안)으로 After You 등 기부금 수입, 정보보호특성화사업 등 국고수입 증가, 산학협력단 전입금 증가, 위탁 교육과정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속병원전입금 감소로 운영수입이 12억원 감소하는 예산(안)으로 부속병원전입금 감소에 따른 의대 기금 인출, 학교버스 구입, 원천정보관 집기구입 등을 위한 기금 총 40억원을 인출하는 등 예산규모가 본예산 대비 76억원이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운영수지가 본예산 대비 54억원이 감소한 44억원이며, 기금은 본예산시 28억원 순적립이었다가 1억 순인출이 되었습니다. 메르스관련 의료수입 감소로 부속병원전입금이 감소함에 따라 운영수지 등 재정상태가 본예산보다 악화된 만큼 기금 인출을 늘려 전부 집행하기보다는 운영지출 예산을 절감하려는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 김선용 :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경예산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주인욱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21 -

이사 이영현

■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 력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본 예산액	증 감
수 입	등록금 수입	130,168	130,132	36
	전입 및 기부금 수입	80,078	81,596	-1,518
	교육부 대수입	14,233	13,907	326
	교육 외 수입	2,977	2,974	3
	투자와 기타자산수입	13,350	9,378	3,972
	고정부채입금	30	30	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8,816	3,981	4,835
계		249,652	241,998	7,654
지 출	보수	115,442	115,271	171
	관리운영비	27,520	26,311	1,209
	연구학생경비	78,787	76,014	2,773
	교육외비용	1,274	1,244	30
	고정자산매입	10,215	8,189	2,026
	투자와 기타자산지출	11,993	10,869	1,124
	고정부채상환	1,130	1,030	100
	예비비	926	720	206
	미사용차기이월자금	2,365	2,350	15
계		249,652	241,998	7,654

제 12 호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이사장 : 아주대학교 보직 임명 동의(안) 발의.

이사장 : 아주대학교 보직 중 2015.8.31자로 임기만료 예정인 학생처장, 공과대학장, 정보통신대학장, 자연과학대학장, 인문대학장, 국제대학원장의 후임과 사임한 연구처장,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장의 후임 및 앞서 의결한 정관 개정 내용에 따라 산학부총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학교장의 제청을 받아 산학부총장 겸 연구처장에 정보컴퓨터공학과 최경희 교수를 2015년 8월 13일부로 임명하고자 동의 요청드리며, 2015년 9월 1일부로는 공과대학장에 건설시스템공학과 이상덕 교수, 정보통신대학장에 전자공학과 조중열 교수, 자연과학대학장에 생명과학과 김혜선 교수, 인문대학장에 불어불문학과 박만규 교수, 국제대학원장에 e-비즈니스학과 임재익 부교수,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장에 약학과 김수동 대우교수, 학생처장에 영어영문학과 조재형 교수를 임명하고자 동의 요청 드립니다.

참고로 의안 제3호 의결을 통해 대외협력처가 국제협력처로 명칭 변경되었는데 이는 직제의 단순 명칭 변경 건으로 현재 대외협력처장은 규정에 따라 국제협력처장으로 변경되므로 별도 임명 동의는 요청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장에 대우교수를 임명하고자 할 경우 정관에 따라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이점 이사님들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께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문 길 주 : 이력사항을 살펴보니 본교와 의료원에 큰 힘이 되실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박 상 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임명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보직 임명 동의 내용

보 직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임명일자
산학부총장 겸 연구처장	정보컴퓨터공학과	교수	최 경희	2015.8.13부 (2년)
공과대학장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이 상덕	2015.9. 1부 (2년)
정보통신대학장	전자공학과	교수	조 중열	2015.9. 1부 (2년)
자연과학대학장	생명과학과	교수	김 혜선	2015.9. 1부 (2년)
인문대학장	불어불문학과	교수	박 만규	2015.9. 1부 (2년)
국제대학원장	e-비즈니스학과	부교수	임 재익	2015.9. 1부 (2년)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장	약학과	대우교수	김 수동	2015.9. 1부 (2년)
학생처장	영어영문학과	교수	조 재형	2015.9. 1부 (2년)

제 13 호 2015학년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이 사 장 : 2015학년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9,779백만원 증가한 51,57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수익용기본재산인 광교 도시지원시설 9-2 매입을 위한 기금 처분액 및 기채 차입 증가, 조세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부속병원 전입금 증가, 2014학년도 결산 차기이월자금 수입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흥 기 :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2014학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 자금 반영 및 조세불복 환급, 수익용 토지 매입에 따른 기금 처분 및 기채, 임대료 수입 증가에 따른 부속병원 전입금 증가 등이 반영된 예산(안)으로 317.9억원의 자금이 증가하는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예산(안)입니다. 운영수지는 본예산 대비 7억원이 증가한 9.3억원으로 운영수지가 개선되었으며, 순수 전기이월자금 47.2억원에서 차기에 48.9억원이 이월되므로 자금수지도 1.7억원 증가하는 예산(안)으로 본예산 대비 재정상태가 개선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주 인 욱 : 원(안)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5학년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합니다.

■ 2015학년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 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본 예산액	증 감
수 입	전 입 및 기부금 수입	7,122	6,696	426
	교 육 외 수 입	4,409	3,376	1,033
	투자와 기타자산수입	19,908	0	19,908
	고 정 부 채 입 금	10,325	325	10,000
	전 기 이 월 자 금	9,808	9,381	427
	계	51,572	19,778	31,794
지 출	보 수	714	672	42
	관 리 운 영 비	1,021	929	92
	교 육 외 비 용	227	32	195
	전 출 금	8,442	8,008	434
	예 비 비	200	200	0
	투 자 자 산 지 출	1,515	64	1,451
	고 정 자 산 매 입 비	33,660	5,102	28,558
	고 정 부 채 상 환	907	407	500
	차 기 이 월 자 금	4,886	4,364	522
	계	51,572	19,778	31,794

9.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 사 장 : 제320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종전과 같 이 저와 김동연 이사, 이영현 상임이사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참석임원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을 참석임원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노호석

이 사

- 24 -

이 사

- 24 -

김동연

이 사

- 24 -

이영현

이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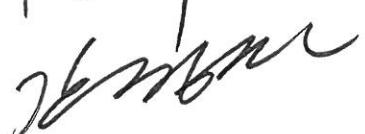
- 24 -

10. 폐회선언

이사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20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9시 40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2015년 8월 13일

이사장	추호석	추호석
이사	김성진	
이사	윤성복	윤성복
이사	문길주	문길주
이사	신희택	신희택
이사	주인욱	
이사	김동연	김동연
이사	박상일	박상일
이사	신상협	신상협
이사	이영현	이영현
이사	최홍	최홍
이사	김선용	김선용
감사	문희창	
감사	배홍기	